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해민의원 · 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4.

발 의 자 : 이해민 · 이주희 · 강경숙
김선민 · 김영환 · 김우영
김재원 · 김준형 · 박은정
박 정 · 박주민 · 백선희
서왕진 · 이정문 · 이정현
이학영 · 이해식 · 이훈기
정춘생 · 조인철 · 차규근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,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,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‘인공지능 전환 대응 부담금’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「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」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에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97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·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」(의안번호 제206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7. 「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」 제17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부담금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